



포장관련 시행 법규 및 그 개선 방향

포장폐기물의 법적 규제 및 방향

박대문/환경처 폐기물재활용과 과장

목 차

1. 머리말
2. 독일의 포장폐기물 회수제도
3. 포장폐기물, 누가 처리할 것인가?
4. 포장폐기물에 관한 법적 규제
5. 현행 예치금·부담금제도의 문제점
6. 향후 대책 및 방향

1. 머리말

포장은 소비문화 최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포장은 인간의 기술진보, 식품 보존방법, 제품의 보호, 유통수단, 생활수준과 사회적 가치구조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포장산업 변천을 살펴보면 30년대에는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는, 소비가 미덕인 사회상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편리성만을 추구한 결과 '버리는 사회'에 맞도록 제작·보급되었으며, 70년대 들어서는 '에너지 위기'의 시대를 맞아 제품의 안전성을 위주로 하되 소재의 감량으로 '무게 축소' 추세를 보였으며, 80년대 들어서는 포장소재의 인체 안정성과 대형 판매장에서의 소비자 선택을 겨냥하는 색상과 디자인의 '미적 감각'에 중점을 두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환경 문제에 당면하여 '친환경성(Environmentally friendly)'이 주요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포장산업도 이에 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장의 역할과 기능은 제품의 보호, 수송편의, 판매촉진 등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되 사회요구의

변화도 수용하여야 하는 바 포장에 관한 우리 나라의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정의를 보면 주로 기능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산업규격 SA 1001」에서는 '물품의 유통과정에 있어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밀하며 낱포장, 속포장, 겉포장 등 3종으로 분류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에서는 '유통과정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법 또는 기술을 말하며 이에는 재료 및 용기의 개발, 표준화, 자동화 등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령 제430호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포장이라 함은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용기 등에 담거나 적합한 재료로 씌운 상태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포장과 환경문제와의 관계는 포장의 정의나 개념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추세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즉 포장으로 쓰이는 포장재질, 용기류, 상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자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자사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회수·처리·재활용에 관한 역할과 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독일의 사례와 처리주체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독일의 포장폐기물 회수 제도

91년 6월 12일 독일은 「포장폐기물 발생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의 포장폐기물에 대한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조에서는 폐기물관리상의 목표로서 포장은 환경이 소화할 수 있고, 물질로 재활용하는 데 저해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포장은 중량과 용적이 내용물을 보호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크기로만 한정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으며 내용물의 취급조건에 맞으면 재충전(refill)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충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물질로 재활용(recovery)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 3 조에서는 포장의 종류를 운반 포장물(통, 상자, 완충재 등), 판매포장(병, 깽통, 용기류, 봉투, 상자 등), 겉포장(셀프서비스용, 선전용 등)으로 구분하고 제작자, 유통·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도

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음료포장·세제류 용기에 대해서는 제조자에게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복 사용용기에 대해서는 보증금 부과를 면제하되 반복 사용률이 지정한 목표율보다 낮으면 다시 면제했던 보증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6조에서는 제조자, 유통자는 판매자가 회수한 포장을 수거하여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공공처리소(공공기관의 처리 또는 재활용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물질적으로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되 정기적으로 충분할 만큼 최종 소비자로부터 포장폐기물을 무상으로 회수하는 기존 회수시스템에 동참(이 경우 자사제품의 재활용 용이성, 생산량 등에 따라 회수시스템에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짐)하면 그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나 제3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의 비용부담하에 재활용 산업체 등 사용처를 개발·지원하거나 기존 회수시스템에 동참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회수·처리·재활용비용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부록에서는 제6조 규정과 관련하여 제조자, 유통자(회수시스템에 동참하는 경우 회수체계 운영자)는 매년 수거율을 증명하여야 하며, 95년 6월 30일까지 유리, 양철, 알루미늄, 판지, 상자, 종이, 플라스틱, 복합물질을 개별 품목별로 전체 발생 포장물의 50%를, 95년 7월 1일부터는 품목별로 80% 이상을 회수하도록 목표율을 지정, 부과하고 있다.

동 제도를 살펴보면 포장의 제조자, 유통·판매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에서부터 재활용 또는 처리까지 깊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생산, 판매,

회수, 재활용 또는 처리까지의 순환 과정 및 그 결과가 제조자에게 환류(feed back)되어 제품의 제조자가 자원절약·순환형 생산체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포장폐기물, 누가 처리할 것인가?

폐기물 수거책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다만 폐기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효율성과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사회구성원간의 선호체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가속화에 따른 대량폐기물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위생적 측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배출자는 수혜자로서 수수료를 부담하였으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기업의 책임하에 자체 처리하도록 하였고,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만을 수거·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폐기물의 사후처리에서 사전적으로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다시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도록 하는 자원순환형·절약형 폐기물정책은 국가, 기업 및 일반국민의 역할 분담하에 사회공동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되 주도적 역할을 기업이 담당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다. 이의 대표적 방법이 바로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치금·부담금제도라 할 수 있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책임은 소비자의 소비절약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

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1차적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는 소비자에 의한 주문생산이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 생산자의 신상품·신소재 개발과 대대적인 PR 활동에 의한 수요 창출을 통하여 선도되기 때문에 생산자의 폐기물을 발생억제적 상품개발, 자원순환 및 절약적 생산활동 및 유통체계 개선은 기업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공동체에 의한 폐기물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수행역할은 매우 중차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의 폐기물예치금제도(덴마크 등)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예치금제도가 기업의 주도적 역할하에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인식과는 많은 괴리가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와 병행하여 소비자와 정부의 적정한 역할분담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문제는 기업의 인식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소비자는 각각의 역할분담이 있고 그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마치 기업 단독으로 모든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정부, 소비자의 역할은 아예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예치금·부담금 납부만으로 기업의 모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한편 더 이상의 책임은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면 왜 기업이 비용의 부담주체

가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치금제도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당해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게 함으로써 자원순환형·절약형 생산구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생산자가 당해 폐기물을 회수·처리·재활용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그 상품의 제조원가를 구성하게 되며 생산비에 반영된 폐기물의 회수·처리·재활용 비용이 상품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전가의 정도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이성, 회수체계, 재활용 기술과 폐기물 자체의 소재나 특성 및 당해 기업의 경쟁여건 등에 따라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전가액 또한 기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폐기물 회수·재활용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업은 동종업체 타기업에 비하여 그만큼 불리하게 되므로 신소재 개발·대체나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로의 제품설계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자원순환형·절약형 생산구조로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금 조성을 위한 비용 징수나 폐기물의 회수에만 예치금제도의 목적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생산자를 통하여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기업의 자원순환형 절약형 생산구조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와 정부간의 역할분담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예치금·부담금제도가 의도하는 원래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기업의 회

수체계 구축의 소극성은 기업에게 주어진 역할은 저버린 채 단지 실질적인 회수·처리·재활용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현행 예치금·부담금으로써 모든 역할을 갈음하고 자원순환형·절약형 생산구조체계의 구축은 외면하겠다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포장물 및 음식물 찌꺼기를 다량으로 양산하는 미국 맥도널드 회사의 플라스틱 종이포장용기 대체, 폐신문이나 골판지 박스의 재활용, 재활용 품 구매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민간부문에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덴마크 등의 기업과 우리 기업을 대조해 볼 때 너무도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여겨진다.

기업의 본래 목적은 생산에만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공급하는가에 따라 폐기물 문제와 재활용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에 부여되는 의무는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생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부담했을 경우 소비자가 예치금 환불을 받기 위해 소매점(구입처)에 예치금대상 폐기물을 반환토록 하면 소매점에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제조·생산자가 이를 수거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소매점에서 이를 처리·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회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나 결국 정부에서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되며, 기업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의 제품소재나 구조 변경 등의 임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 자원절약형·순환형 생산구조로의 전환은 이

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4. 포장폐기물에 관한 법적 규제

「93~2001 국가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의 정책방향은 감량화와 발생된 폐기물의 최대한 재활용 및 환경적으로 안전한 적정처리를 통하여 최종처리 대상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자원재순환형 경제·사회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대책은 소비자에게는 쓰레기 수수료를 현행 정책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의 자기부담률(현행 12%)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생산자에게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예치금과 부담금의 대상품목, 부과요율을 확대해나가고 상품의 포장억제 및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음식쓰레기 퇴비화 등을 통하여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업무와 연계하여 1차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전국적 수급조정 및 재활용 기술개발의 전담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품의 제조·생산자는 사업자단체의 회수체계를 구축,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회수·재활용·처리에 따르는 비용의 제품가격 반영, 재질·구조변경,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예치금·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예치금·부담금의 회수·처리·전환의 유인효과가 매우 낮은 점이다.

둘째, 예치금·부담금의 현행 요율에 있어서 양지간 차등이 별로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자원재순환·절약형 사회구조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그동안 제도 시행으로 환경유해제품 생산억제 및 환경 대응상품 증가, 재활용산업 융자 지원, 환경단체의 활발한 움직임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조·생산자인 기업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 다행이지만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기본행동은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폐기물 감량, 재활용 폐기물 감량, 재활용 구조로 전환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법령에 의한 직접 규제와 경제유인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우리 나라에서는 직접 규제 수단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와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자(제조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시(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정: 환경처 고시 제92-57호)된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조사 등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저해할 때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접 규제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유인책이 바로 동법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예치금 제와 비용부담제인 것이다. 즉 회

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은 예치금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5. 현행 예치금·부담금제도의 문제점

현행 예치금 대상품목은 포장물로서의 음식료 등의 용기류와 그외 수은전자류,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TV, 세탁기, 에어컨)이며, 부담금 대상품목은 용기류로서 살충제, 부탄가스제품, 유독물 제품과 화장품, 과자제품 중 세 가지 이상 복합재료 용기이며, 수은·산화은전지 이외의 수은 1ppm 이상 함유 전자류와 부동액, 형광등, 겹, 1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원료이다.

부담주체는 예치금·부담금 모두 제품의 제조·수입자이다. 그러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이나 용기류는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출제품은 국내에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치금·부담금 부과가 제품의 수출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었으나 원래의 목적대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첫째, 예치금·부담금의 회수·처리·전환의 유인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제도의 무리없는 도입을 위하여 요율이 불가피하게 낮았다 할 수 있으나 제도 시행이 3년째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현행 요율이 실제 회수·재활용 비용보다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자가 이를 회수·재활용 할 경제적 가치나 필요성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폐기물의 회수체계 구축에 미온적이며 당해제품의 자원절약·재순환형 생산구조에의 환류체계(feed-back system)가 결여되어 있고 미반환 예치금의 손비처리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예치금제와 부담금제의 차등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요율은 양자의 수준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예치금 대상품목은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포장류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수율의 정도, 회수체계 구축 및 제조·생산자의 회수노력을 감안하여 유인동기가 부여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재활용을 위한 재질이나 구조전환과 재활용 기술개발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담금 대상품목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포장류로서 사용규제 또는 억제되어야 할 품목이므로 그 요율은 예치금 대상품목보다 과중한 부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등을 둠으로써 부담금 대상품목이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치금 대상품목은 보다 더 친환경성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양자 대상품목의 요율이 비슷하고 부담금 제조 회수라는 부담을 갖지 않게 되므로 예치금 대상품목이 오히려 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기업측에서도 오히려 부담금 대상품목으로의 전환을 선호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원재순환·절약형 사회구조의 기반 취약이다.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구하고 재순환형 사회구조를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 가능품의 회수체계가 구축되어 적정한 분리배출, 회수에 의한 물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재활용 기술에 의한 생산공정에의 투입 및 생산된 최종제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순환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과 체계구축 및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함께 적정한 역할 분담을 갖고 각자의 분야별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기반 형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즉, 소비자는 자원화 가능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여 선별·가공처리비를 줄이고, 정부는 각종 제도와 금융·세제·기술의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협조와 참여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제조자가 반환된 제품·용기의 회수 및 공정에의 재투입, 기술개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대체나 구조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 동안의 제도 시행에 따라 나타난 효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환경유해 제품의 생산이 억제되었고(무수은전지 생산보급), 환경친화적 대체용기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기금 조성으로 재활용산업에 대해 응자 지원 등이 실시되었으며, 타이어, 윤활유 등 회수·처리단체가 결성·활동중에 있고, 가전제품, 금속캔류 등 일부 품목이나마 사업자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준비 또는 수행중에 있으며, 재활용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된 것이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6. 향후 대책 및 방향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한 폐기물정책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무역거래 질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선진화된 의식수준과 폐를 같이 하는 환경보전은 현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향후 폐기물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자원절약형·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몇 가지 대책과 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환경친화적 포장이 아닌 소재와 용기류는 생산과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독일의 '포장폐기물 발생예방에 관한 규정'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포장은 환경이 소화할 수 있고 물질로 재활용하는 데 저해되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중량과 용적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1회용품의 사용규제가 점차적으로 확대·강화되고 포장재질에 대한 규제도 점차 구체화될 것이다.

'95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추

진중인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소의 범위 확대, 코팅된 1회용 광고선 전물 사용자제 및 제품용적 3만cm³ 미만인 소형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 완충포장재의 사용규제, 백화점 등에서의 음식료품 외의 제품 판매시 비닐백 사용억제 등은 이러한 취지의 일환인 것이다.

둘째, 현행 예치금·부담금 요율의 점진적 현실화 및 조정이다.

지나치게 낮은 현행 요율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면제 인식을 갖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마저 주어진 역할분담을 기업의 무책임으로 떠넘기는 현실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요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기업에서는 자사제품 폐기물의 회수·처리·재활용 비용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되 나머지 뜻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도 제품의 선택, 분리배출에의 적극 참여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순환에 주어진 뜻을 감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적 제품은 회수·재활용에 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대신 친환경적 제품이 아닌 것은 기업 스스로 회수·재활용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당연히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이를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수체계가 구성되어 회수율이 높거나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은 예치금요율을 낮게 부과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예치금요율을 보다 높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부담금 대상품목은 예치금 대상품목보다 훨씬 과중한 부담이 되도록 요율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부담금 대상품목의 제품·용기류가 친환경성 제품·용기류로 전환될 수 있는 효과를 확

정부에서 폐기물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자원절약형·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향후 대책 방향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환경친화적 포장이 아닌 소재와 용기류는 생산과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예치금·부담금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조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기업·소비자 모두 적정한 역할 분담으로 분리배출·회수·운반·선별·재활용·재사용 등의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원재순환형·절약형 사회 구조의 구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폐지, 고철(캔 포함), 파유리 등 주요 재활용품목 생산시설은 현재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위한 회수 및 사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운반, 선별, 재생원료로서의 가공과정에 소용되는 비용이 높아 재생원료가 신규 원료보다 값이 싸지 않거나 원료값이 같을지라도 재생원료를 사용한 최종제품이 신규원료를 사용한 신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소비자의 사용 외면으로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소비자는 재활용 가능품이 재생원료로 되는 과정에서 선별, 인건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고 일정량이 될 때 가지 집안에 보관하거나 일정구역단위별로 한데 모아 수거·운송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며 임무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재활용품의 수거 인력과 장비를 확보, 효율적으로 회수체계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최소의 행정비용으로 재활용 생산시설에 폐자원이 유입되는 데 최대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

활용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주어진 폐자원 사용목표율이 달성되도록 금융, 세제 등 제도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은 정부의 회수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함이 없이 자사제품의 회수를 위한 사업자단체 회수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치금제도가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이를 회수하여 제3자 또는 정부에게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처리, 재활용함으로써 재질대체, 구조개선, 비용절감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기업은 회수·재활용의 결과를 생산과 경영방식에 환류시켜 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새로운 경영과 생산방식을 끊임없이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분리배출에서 재생제품의 소비까지 이루어져야 만 비로소 재활용이 되는 것인 만큼 재생품 소비에 애정을 갖고 분리배출의 질을 높임으로써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되 부담금 대상품목은 친환경성 제품으로 전환되도록 선택의 지혜를 발휘하거나 높은 부담금 부과 결과 가격이 상승된 부담금 대상품목의 수요가 감소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재생품 수요창출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자원순환형·절약형 사회구조가 이룩될 수 있으리라 본다.